



경기도의회 제391회(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41번)

2026. 6. 23.(화)

여 성 가 족 평 생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성란 의원 등 23인
2. 발의연월일 : 2025. 10. 31.
3. 회부연월일 : 2025. 11. 3.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 가. 아동기는 창의성, 자율성, 사회성이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로, 다양한 놀이 경험이 전인적 성장의 핵심 요소인 반면, 오늘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아동은 정형화된 기존 공공 놀이공간보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과 연계된 융합형 놀이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나. 경기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아동이 놀이의 주체가 되어 공간과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디지털 기술과 환경교육 요소를 접목한 창의적 맞춤형 실내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음.
- 다. 따라서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조성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회성 사업을 넘어 놀이 중심 돌봄체계 확립과 지역 놀이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내용

- 가. 아동이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의

적 실내 놀이공간'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나. 도지사가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간의 운영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함(안 제7조의2).

### Ⅲ. 절차 이행 여부

#### 1. 입법예고 및 집행부 협의 결과

가. 입법예고(2025. 10. 21. ~ 10. 27.) : 의견 없음

나. 집행부 협의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 의견 없음(아동돌봄과-22943, 2025. 9. 17.)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 의견 없음(보육정책과-17355, 2025. 9. 19.)

####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 미첨부(의회 예산분석과-671, 2025. 9. 16.)

-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Ⅳ. 검토의견

#### 1. 주요 내용 검토

가. 제안취지와 필요성

○ 아동기는 창의성과 사회성이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로, 다양한 놀이 경험이 필수적이거나,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놀이 문화가 기존의 신체 활동 중심에서 인공지능(AI)·가상현실(VR) 등을 접목한 ‘디지털 융합형 놀이’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안전한 실내 놀이공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7조제1호에서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특화 시설의 설치 기준과 안전 관리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변화된 환경에 맞는 시설의 정의와 운영 기준을 명문화하여 제도적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아동의 새로운 놀이 수요를 반영하여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지사가 관련 공간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나. 개별 조문 검토

○ 안 제2조(정의) 제4호에서는 실내 기반 놀이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아동이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 중심 실내 놀이공간을 도지사가 지정한 시설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음.

- 다만 법제과 검토 의견(법제과-1044)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의 규정은 그 자체만으로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된 체험 중심 실내 놀이공간”이라는 문구는 시설의 판단기준·요건·평가 요소 등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다소 추상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는 안 제2조에서 정한 “도지사” 약칭을 반영하여 조문의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간결성 및 체계적 정합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의2(창의적 실내 놀이공간의 조성 및 운영 지원)**는 현행 조례의 포괄적인 지원 규정(제7조)을 보완하여, 특화된 시설인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1항 각 호에서는 교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안전시설 보강 등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되, 제3호에 포괄적 규정(“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두어 급변하는 놀이 환경과 다양한 현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만 해당 조항은 재정 지원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sup>1)</sup>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개정 시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와 절차 이행이 필요함.
- 제2항은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의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시설 관리, 이용 현황 기록 등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시설의 지속적·안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 체계<sup>2)</sup>와도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주체의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음.
- 다만, 조문 체계의 정합성과 아동 안전의 보편적 적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현행 제7조(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가 이미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기보다는 제7조의 사업 범위에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둘째, 안 제7조의2제2항의 ‘안전관리 의무’는 특화된 공간뿐만 아니라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

---

1) 「지방자치법」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를 확대하는 것이 아동 안전 확보라는 조례의 목적 달성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

## 2.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술과 놀이 문화의 융합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현행 조례상 부재했던 특화 시설의 개념과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제도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이며, 특히, 예산 편성에 따라 추진되던 사업을 자치법규로 명문화하여 사업 추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본 조례안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문 체계의 간결성과 아동 안전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바, 관련 조항의 통합 및 적용 범위 확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제명 관계 법령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아동복지법」, 「지방자치법」
검토 의견	<p>○(입법목적 및 상위법 검토) 본 조례안은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조성 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p> <p>-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 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 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필요한 사업 예산을 지원 하도록 하며, 운영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p> <p>○(“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정의규정) 안 제2조제3호 “창의적 실내 놀이 공간”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아동이 <u>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된 체험 중심</u> 실내 놀이공간으로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 함.</p> <p>- 정의규정은 그 자체로서 정의하려는 용어의 의미가 최대한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해야함.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조성된 체험 중심 실내 놀이공간”은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므로 보다 명확하게 정의할 것을 제안함.</p> <p>○(재정부담 수반 조례) 안 제7조의2 도지사는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 을 수반하는 것으로 조례를 의결하려면 미리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 야 할 것임.</p> <p>○(성별영향평가 지침 위배 여부) 본 조례안은 성별 구분이나 고정관념 과 관련한 표현이 없고, 성별 차이 등 차별 조항이 없어 성별영향평 가 지침을 위반하지 않음.</p>
검 토 기 간	2025년 9월 9일~
검토 담당자	행정6급(입법조사관) 임 이 랑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의 검토의견을 보내드립니다.

2025년 9월 17일

경기도의회사무처 의정국 법제과

의정지원과 귀중